



## 프랑스 수감자의 정보 공개 청구 거부권에 관해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교정기획팀

### I. 시작하면서

프랑스는 행정부가 관리하는 기록 및 문서에 관한 정보 열람권을 인정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권 형벌의 집행 절차(Des procédures d'exécution) 제8편은 수감자의 전과 및 범죄 기록(Du casier judiciair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768조는 자동화된 전국적인 전과 및 범죄 기록은 법무부 장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프랑스 수감자의 범죄 기록은 프랑스 행정부가 관리하는 기록 및 문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기록 및 문서의 관리, 정보 청구 및 열람에 대한 절차 및 규제는 1978년 1월 6일자 정보화와 자유에 관한 법률 n°78-17(2008년 7월 17일 개정: 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국민과 행정 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법률 78-753(Loi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및 상기 법률을 개정한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관한 2000년 4월 12일 법률 2000-321(Loi 2000-321 relative aux droits des citoyens dans leurs relations avec les administrations(DCRA) du 12 avril 2000)이 규정하고 있다.

본 글은 프랑스 수감자에 대한 개인 정보 및 수감 기록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와 이 청구에 대한 거부권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범죄자의 기록이 포함되는 행정 기록의 종류와 내용, 관련 법률, 행정 기록에 대한 열람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II. 정보의 종류 및 내용

### 1. 관련규정

1978년 1월 6일자 정보화와 자유에 관한 법률 n°78-17은 제1조에 정보화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화의 전개는 국제적인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화는 개인의 신상·인권, 사생활 및 개인 또는 공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sup>1)</sup> 또한 개인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기관으로 법률이 수집, 기록의 목적과 수단을 인정한 개인, 공공 기관 또는 관련 기구를 규정하며, 개인 정보의 수집은 프랑스 영토 및 유럽 연합 가맹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2)</sup>

한편 개인의 범죄, 사법적 판결, 교정 시설 수감자의 전과 및 수감 자료의 수집 및 기록은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과 같은 기관, 즉 사법기관, 공공 행정기관 및 자연인, 그리고 보조 행정기관으로서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 담당한다.<sup>3)</sup>

### 2. 경찰 및 정보 기관의 기록

2008년 현재 프랑스 경찰 및 정보 기관이 관리,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는 37개에 달한다. 경찰조직으로는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Police

nationale)과 국방부 소속의 헌병(Gendarmerie nationale)이 수집, 관리하는 범죄인 등에 관한 개인 기록이 있으며, 정보조직으로는 해외 안전일반국(DGSE)과 국방 보호 및 안전국(DPSD) 등이 국가안전 및 테러 방지 등에 관해 수집, 관리하는 기록이 있다.

국립경찰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으로는 범죄, 도난 차량, 실종자, 일반 정보, 국경 정보, 테러, 위조지폐, 지문, 경기장 출입 금지, 미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가능 개인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이 기록은 국립경찰 정보 열람 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경찰 조직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에 속하는 헌병이 수집, 관리하는 기록으로는 해외 출생자, 행정벌을 받은 개인, 선원, 군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기록 등이 있으며, 이 중 개인의 지문 기록과 수배범에 관한 기록은 국립경찰과 공유한다.

### 3. 사법기관의 판결 기록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제 5 권 형벌의 집행 절차(Procédures d'exécution) 제8편 범죄 기록에 관한 규정에서 사법 기관, 즉 검찰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의 전과 및 범죄 기록에 관해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사



1) L'informatique doit être au service de chaque citoyen. Son développement doit s'opérer dans le cadr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lle ne doit porter atteinte ni à l'identité humaine, ni aux droits de l'homme, ni à la vie privée, ni aux libertés individuelles ou publiques.

2) 1978년 1월 6일자 정보, 기록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5조

3) *Ibid.*, 제9조.

법기관이 관할하는 수감자의 전과 및 범죄 기록으로는 우선 범죄 행위로 인해 징벌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기록이다. 개인에 관한 전과 및 범죄 기록은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적인 신원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정보를 검사한 후에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지 않는 신원 조사 번호로 분류된다.

개인에 관한 전과 및 수형 기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심 판결이나 결석 재판에 의한 판결에 의한 범죄 기록, 아동 범죄에 관한 판결에 의한 범죄 기록,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징벌에 의한 범죄 기록, 자연인의 파산 신청, 부도 또는 상법 L.653-8조의 금지 규정에 의거한 판결기록, 양육권의 마감이나 취소에 관한 사법적 판결, 외국인에 대한 추방 명령, 국제 조약을 적용한 외국 사법기관의 판결을 프랑스 정부가 참고하거나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서 집행한 기록, 공화국 검사가 확인한 형법상의 징벌 집행기록이다. 또한 형벌의 집행에 관한 판결 또는 판결 유예, 사면, 감형, 가석방 및 형벌의 취소, 형벌 집행의 연기 판결, 선고 해제, 추방 금지 판결, 형의 만기일 및 벌금에 관한 판결도 기록에 포함된다.

한편, 상기 판결로 인해 기록되는 개인의 전과 및 범죄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삭제된다. 전과 및 범죄 기록은 사면이나 전과 및 범죄 기록의 수정 판결에 의해 삭제된다.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 외에 정신장애로 인

한 형법상 무책임 판결 이후 40년 동안 범죄로 인한 징벌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상기 무책임 판결도 기록에서 삭제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과 및 범죄 기록도 삭제된다. 개인 파산 또는 상법 제 L.653-8조에 규정된 금지조항에 의한 판결로서 부채의 소멸로 인한 종결 판결, 선고 해제 판결 또는 자연인에 대한 파산 판결 이후 5년의 파산 만기 도래로 인해 판결이 확정적이 된 경우 상기 판결은 기록에서 삭제된다.

만약 파산선고의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에는 동일 기간 동안 파산선고 판결은 기록에 포함된다. 파산 이후 선고 해제에 관한 판결, 3년 만기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기간의 만기로 인해 형이 확정적이 된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경우 3년 기간 만기 후 형이 확정적이 된 벌금형 판결, 재범이 발생할 경우 이 기간은 4년으로 연기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의 경우 3년 동안 형법상의 징벌 판결이나 새로운 기소유예 결정을 받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결정도 삭제된다. 파산 선고 이후 선고 해제 판결의 대상이 되는 판결로서 제798조에 해당하는 기록의 삭제를 선고할 경우 삭제한다.<sup>4)</sup>

한편 프랑스는 2004년 제정된 페르벤 법 II (Loi Perven II)에 의거해 성범죄자에 관한 사법적 자료(FIJ AIS)를 창설했다. 이 자료에 관한 조항은 2005년 12월 12일자 재범자 대우에 관한 법률(loi du 12 décembre 2005 relative au traitement de la récidive)과 2006년 4월 4일자



4) 형사소송법, 제768조-제769조.

부부 폭력과 미성년자에 대한 예방 및 단속에 관한 법률(loi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에 의해 강화, 개정되었다. 2005년도 법률에 의하면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는 살인 또는 고문이나 야만적인 행위 및 재범으로 발생한 살해 범죄에 관련된 형사 소송상의 절차와 동일하게 작성된다. 또한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를 구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로 인한 기소 유예, 구속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포함되는 개인 정보는 인적사항 및 주소, 범죄의 내용, 일시 및 장소, 확정된 형벌의 내용, 기간, 일시 및 사법 기관의 명칭이 기록된다.

#### 4.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관한 기록

프랑스 교정시설이 전국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자료는 교정시설의 행정 및 건물 관리에 관한 기본자료, 수감자에 관한 통계자료 및 수감자 개인에 관한 자료가 있다.

##### (1) 기본 자료

교정시설이 수집, 관리하는 기본 자료는 교정시설의 내부 규칙, 수감 제도, 교정시설의 운영 규칙(위생, 수감자의 수, 수감자의 이동 및 전감 등)이 있다. 이 자료에는 수감자의 위생 및 치료, 의복 및 식사, 수감자의 청원 등에 관한 일상 생활, 수감자의 작업, 교정시설의 안전 상태, 감독 위원회, 수감자 분류 및 가석방, 감독 시설 및 수

감자 방문, 교정시설의 장비 및 설비, 교도관, 종교 활동, 사고(단식 농성, 탈옥, 교정 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등이 총 망라된다.

##### (2) 수감자 개인에 관한 자료

한편 수감자 개인에 관한 자료는 각 교도시설에 근무하는 서기가 작성하며, 해당 교도시설에서 보존한다. 이 수감자 개인 자료는 수감자가 다른 교도시설로 이송될 경우 수감자와 더불어 이송되는 교도시설로 이전된다. 수감자 개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서류로 구성된다.

사법 판결에 관한 부분으로 판결 요약본과 형의 집행에 관련된 모든 행정 서류, 교도 당국에 관한 부분으로는 수감자의 수감기간 동안의 수감시설 내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에 관한 서류 및 결정으로 교도소장이 작성한다.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교육 담당자가 작성한 사회 복귀 교육 진척에 관한 서류. 마지막으로 수감자가 수감기간 동안 받은 직업교육, 사회 복귀 교육 및 형기 진행 중 행한 모든 종류의 시험, 청원 또는 평가의 결과에 관한 관찰서류가 있다. 반면, 수감자에 관한 의료서류는 교도시설의 의료 당국이 보존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감자 개인의 인적 사항 및 범죄 내용, 정치적 단체의 가입 여부, 테러 단체의 가입 여부, 조직 범죄 단체의 가입 여부, 이런 범죄 내용에 의거한 상이한 징벌 내용 및 수감되는 교정시설의 등급, 수감자의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에 관한 평가, 수감자의 교정시설 내에서의 작업 내용, 수감자의 교정시설 내에서의 사

고 및 범죄 행위, 건강 진단, 사회 복귀용 교육, 교정시설 책임자의 의견, 형의 집행시 수감자의 이송을 담당했던 검찰관의 의견, 수감자의 정신 진단, 수감자의 전과 기록, 수감자에 대한 방문자의 개인 신상 정보 및 사법적 판결 문서 및 형법상 기록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한편, 1978년 1월 6일자 정보화와 자유에 관한 법률 n°78-17의 적용법인 1978년 7월 17일자 법률 n°78-753은 수감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보관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기본 자료의 경우 60년, 사법 당국의 수감자에게 선고한 확정 판결에 관한 자료는 100년, 수감자 통계자료는 30년, 수감자 개인정보 자료는 100년, 수감자의 교정시설 내에서 행한 작업에 관한 자료는 30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감자의 범죄 및 위법행위에 관한 기록은 60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한다.

교도시설이 담당하는 수감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관해서는 프랑스 문화재 관리에 관한 2007년 10월 11일자 내부지침 DPACI/RES/2007/016과 1985년 7월 4일자의 내부 지침 AD 85-2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프랑스 교도시설이 보존하고 있는 범죄 및 형벌 관련자료는 1만 5,000건에 이르며 내 군데의 주요자료 보관시설에서 보존하고 있다.

### Ⅲ. 수감자 개인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조항

범죄인에 대한 형의 확정 판결에 관한 모든 자

료는 법무부의 전국 사법자료국에서 담당한다. 사법자료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재 270명으로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법자료의 정보 수집 및 기록화에 근무한다. 사법자료국에 속하는 국 중에서 사법사건 담당국(Bureau des affaires juridiques)이 전국적인 전과 및 범죄 자료의 작성과 보존 임무를 담당한다. 집행절차의 목적이 되는 수감자를 위한 특별문서는 교도시설의 서기가 작성한다.

수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수감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수감자는 본인에 관한 정보 및 행정문서 열람 신청은 본인이 수감되어 있고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교도시설 당국 또는 교도시설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반면, 수감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문서공개 신청에 대해 공공 안전, 개인 또는 제삼자에 대해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수감자 개인 정보 공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일부만 공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개가 허용된 정보만 청구자에게 공개된다.

문서의 공개에 관한 모든 거부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개 청구에 관한 답변이 한달간 없을 경우에는 수감자의 공개 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수감자가 이 거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선 행정문서공개위원회(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에 제소할 수 있으며, 행정문서공개위원회가 수감자의 공개 청구를 기각할 경우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행정문서공개위원회는 행정문서 공개청구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만약 위원회의 의견이 공개 청구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행정 부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 및 자료의 공개는 법원 서기가 담당한다.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대상자는 페이지당 0.18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는 본인이 관련된 판결문이나 형 집행 명령서와 같은 사법 절차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문서의 사본은 관련 사법 당국에 요청한다. 모든 수감자에 관한 개인 기록 문서는 형집행 담당 판사의 서기가 보존한다. 수감자의 변호사도 이런 사법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사법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사본을 획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서 사본의 발급 비용은 수감자가 부담한다. 수감자의 변호사는 이런 문서의 사본이나 수감자의 형집행 절차 서류에 포함된 형집행 명령서의 사본을 수감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반면에 수사 및 재판 진행을 담당하는 예심 판사가 이 문서의 전달에 대한 반대 할 수 있다.<sup>5)</sup>

#### IV.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국민과 행정 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법률 78-

753(Loi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은 제5조에 행정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를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의 설치를 규정했다. 이후 이 법은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관한 2000년 4월 12일 법률 2000-321(Loi 2000-321 relative aux droits des citoyens dans leurs relations avec les administrations (DCRA) du 12 avril 2000)에 의해 개정되었다.

##### 1. 임무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 기관으로서 정보 열람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 기관이 아니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정 행정 기관의 정보의 공개 청구가 거부당할 경우 공개 청구자는 상기 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정보로는 국가시험 사본, 개인의 징세내역, 개인의 의료정보, 건축 허가서,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편물, 시의회 의사록 녹음자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리스트 등이다.



5) 유럽 연합 교도 행정에 관한 규칙 n° 23.6, 30.2 (Règles pénitentiaires européennes),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24-1조, D.제49-29조, D.제155조 - D.제167조.

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이 공공 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결정이 진행된 절차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결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해당 행정 정보의 공개성과 재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행정 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가능 여부 또는 정보의 공개 및 재사용에 대한 절차에 대해 위원회에 문의한 내용에 답변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적 또는 민간 행정 기관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열람을 권장한다.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당한 당사자는 행정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상기 위원회의 제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반면 하원의 명령, 국사원 및 행정 법원의 결정, 감사원의 특정 문서, 공화국 조정관에게 제출된 청원서 등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기관이 작성한 연구 관련 문서 및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서류도 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행정 서류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공 정보의 공개나 재사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없다. 단지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직접 정보 공개 청구의 거부에 대해 제소할 수 없으며,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 정보 공개를 거부당한 당사자의 제소를 접수한 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 2. 정보 열람의 절차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는 우선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정보의 파악은 관보에 열거된 문서에서 찾으며 해당 행정기관에 정해진 신청서를 통해 정보 공개를 신청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서면 신청을 장려한다. 해당 정보는 현장에서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sup>6)</sup>

## 3. 정보 열람의 제한

행정기관에 정보 공개를 신청한 후 해당 행정기관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신청자는 2개월 내에 국가정보자유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제소를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에 관한 답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 국방의 안전, 외국 정부의 정책, 세금 포탈 등과 같은 세무 조사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서류, 산업 비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사법 판결 및 사법소송 절차 및 진행에 관련된 서류 등은 공개가 거부된다.<sup>7)</sup>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6)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관한 2000년 4월 12일 법률 2000-321 제4조-제17조.

7) *Ibid.*, 제18조-제25조.